

주휴수당

받고 계신가요?



주휴수당은....

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
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
하는데,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
주휴수당입니다. 주5일, 주40시간 미만
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 40시간에
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.



누가,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
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
대상이 되며,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예를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
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
주휴수당을 안지키면?

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
근로기준법 제110조(벌칙)에 따라 2년 이하의
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
받을 수 있습니다.

주휴수당 Tip!

Tip 1. 주휴수당 계산법은?

- 만약 1주일에 20시간 일하는 사람이 개근했다면?
→ 주휴수당=(20시간/40시간) × 8시간 × 시급

Tip 2. 월급을 받는 사람도 주휴수당이 있나요?

- 예, 그렇습니다. 다만, 월급제의 근로자는 이미 월급에
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.



도움이 필요하실때는?

전국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시거나,
국번없이 1350번,
또는 1644-3119(청소년)로 전화주세요.

고용노동부 홈페이지(moel.go.kr) 또는
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(youthlabor.co.kr),
앱(구글플레이에서 “청소년 근로권익센터” 검색)을
통해서도 빠른 상담 · 신고가 가능합니다.

기초노동질서

사업주와 근로자의 약속입니다



일하는 사람은 누구내!

- * 최저임금 준수 *
- *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*
- * 임금체불 예방 *
- * 주휴수당 지급 *

최저임금

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!



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?

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8,350원,
일급으로 환산시 66,800원(8시간 기준),
월급으로 환산 시 1,741,560원(주 40시간,
월 208.57시간 기준, 주휴수당 포함)입니다.



최저임금을 안 지키면?

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
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
수 있으며,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
않은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
받을 수 있습니다.



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가까운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주세요.
(전화 1350) 참고로,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한
경우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을
지급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.

최저임금 Tip!

Tip 1.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려면?

-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(www.minimumwage.go.kr)→
'나의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'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.

Tip 2. 교육이나 수습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?

- 교육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되며, 감액될 수
없습니다. 반면,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
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최대 10% 감액* 하여 지급할 수
있습니다.(최대 3개월)

* 숙련이 필요없는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(최저임금법 개정, '18.3.20.시행)

근로계약서

일하기 전, 반드시!



왜 써야하나요?

근로계약서는 임금,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
명확히 정하는 것으로,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
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.



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?

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
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,
만약 기간제 · 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
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
어떻게 써야하나요?

근로계약서에는 임금, 근로시간, 휴일, 연차
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,
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
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.

근로계약서 Tip!

Tip 1.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?

- 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고,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
적용됩니다. 다만,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.

Tip 2. 표준근로계약서는 어디에 있나요?

-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→ 알림마당 → 알려드립니다 →
표준근로계약서(5종)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가까운 고용노동청을 방문하셔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임금

정해진 시기에, 전액을!



임금을 못받았다면?

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 주세요.
(①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고접수,
②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신고접수)
또는, 직접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실
수도 있습니다.

(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 → 체불금품확인서를
신청 · 발급 →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
또는 직접소송)



체불한 사업주는 어떻게 되나요?

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
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또한, 체불사업주명단 공개 및 신용제제의
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.

임금 Tip!

Tip 1. 소액체당금 지원제이란 무엇인가요?

- 근로자 생계보장을 위해 체불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에게
정부가 우선 밀린 임금(400만원 한도*)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
※ 지급절차: 고용부에 체불임금 신고→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신청·발급→법률구조공단
무료법률구조신청 또는 직접소송→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소액체당금
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

※ 대상: ①퇴직일 기준 6개월 이상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
②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체불임금 소송 제기
③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

*'19년 7월 1,000만원 한도로 인상예정

Tip 2.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란?

- 체불방지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의 인적
사항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.

※ 대상: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및
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 3천만원(신용제제 2천만원) 이상인 자